1. 학칙

제정	1994.11.01
제1차 개정	2006.03.01
제2차 개정	2007.04.13
제3차 개정	2008.04.10
제4차 개정	2009.04.02
제5차 개정	2010.04.08
제6차 개정	2011.03.22
제7차 개정	2016.04.11
제8차 개정	2018.04.11
제9차 개정	2019.04.09
제10차 개정	2020.04.0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장성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장성중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54(대화동 2096)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다.

제5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학기)
본교의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기 중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한다.

제7조 (휴업일)

1. 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관공서의 공휴일
   나. 개교기념일 : 6월 7일
   다. 하계방학
   라. 동계방학
   마. 학년말 방학
   바. 주 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
2.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제 다호, 제 라호, 제 마호의 방학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4.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5.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이 출석 및 실습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8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바에 의한다.

제9조 (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바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51조에 의거 학생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육법 시행령 제82조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외국에서 거주하고 귀국한 국민 등의 자녀
2.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의거 교육장이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부터 편입학을 추천받은 자와 유예한 자로서 재취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학년 학생 정원의 3% 이내
3.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의 자녀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고사·과정수료·졸업

제10조 (교육과정운영)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 정하는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 · 운영한다.

제11조 (수업운영)

1.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4.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교외체험학습)

1.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의거 다음 각 항의 1과 같이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1) 기간 : 당해 학년 동안 제7조의 휴업일을 제외하고 연간 20일 이내 이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2) 방법 : (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고 실시 후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한다.(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3) 출결처리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한다.
   나.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1) 대상 : 국내 소재 학교로 한다.
      (2) 기간 :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기간을 존중하되 해당 학년 범위 이내의 기간으로 현지 학교장과의 협의 결과에 의한 기간 동안 실시한다.
      (3) 성적관리 : 교환학습기간의 성적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4) 출결처리 : 교환학습기간의 출결상황은 현지 학교의 통보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2. 학교 교육계획에 또는 학습지도의 필요에 따라 유적지, 산업시설, 박물관 등 체험 학습장을 지정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3. 체험학습에 따르는 지도 교사의 경비는 학교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일수)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할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고양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학업성적관리)

학업성적관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15조 (지필평가)

1. 지필평가는 학기별로 2회 이내 실시한다.
2.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 지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지필평가의 과정에 보안 관리를 강화한다.
4. 부정행위 관련자는 학생의 경우 학생선도규정, 교직원의 경우 징계양정기준에 따른다.

제16조 (수료 및 졸업)

1. 각 학년의 과정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2. 각 학년의 과정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3.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유예·면제·정원외관리

제17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8조 (입학시기)

1.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 (입학방법)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호에 의거 경기도고양교육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중학교무시험배정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

제20조 (재취학)

본교에서 유예한 자로서 다시 취학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예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학교장이 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유예 당시 학년의 이상 학년에 취학을 원하고 학교 적응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 본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학년을 정해 재취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전·편입학)

1.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해서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의거 다른 학교로의 전출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또는 전·편입학할 수 있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 시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단, 외국과 우리나라의 학제차이로 국내에서 계속하여 수학하였을 때의 학년보다 높이거나 낮추어 전·편·신입학하는 경우 1학기(6개월)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교내 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년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의 전·편입학 방법은 경기도고양교육청 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시행하며 귀국학생 등의 전·편입학을 위한 개별교과목에 관한 교과목 점수 인정여부는 교과목별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7.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 전원을 제74조(편입학 등) 및 제75조(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해당 학년 정원의 정원 외 2%이내에 전·편입학을 허가하며, 정원 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도 재취학 및 전·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8.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피해자등의 취학 지원) ①항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학을 지원하는 관계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2조 (유예, 면제 및 유예자, 면제자의 학적관리)

1. 의무교육대상자의 경우 퇴학(자퇴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취학 의무의 유예를 받는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4.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 실시 후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 (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보증인)

1.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2.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3. 보증인·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교과목별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제25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2.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6조 (교과목별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과 제21조 제6항에 의한 전·편입학 시 교과목별 점수 인정여부 심사하기 위하여 교과목별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장 수익자부담 경비 징수

제27조 (수익자부담 경비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교육벌

제28조 (학교생활규정)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포상 및 교육 벌 등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제29조 (포상)
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훈육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교육벌)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벌을 줄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가. 학교 내의 봉사
   나. 사회봉사
   다. 특별교육이수
2.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벌을 줄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교육벌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3. 제1항의 교육벌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학생자치활동)
1.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성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2.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제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10장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협의회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 및 각종 협의회)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각종 협의회 및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장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조직 · 운영

제35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조직)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 제 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36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목적)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 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 교장
2. 부위원장 : 교감
3. 위원 : 교무부장, 특수학급 담당부장, 통합학급 담임교사, 특수교사, 보건교사, 학부모(개인 사정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 불참 시 학부모 대표가 위임받아 구성원으로 조직될 수 있음)

제38조 (심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학급 교육 (입급) 및 환급 대상 아동의 선별 및 진단·평가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학급 배치에 관한 문제 협의
3. 특수학급 운영상의 제반 문제 협의
   가.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제반 사항
   나. 특수학급,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다. 입, 환급 및 추수지도에 대한 논의
   라. 통합교육관련 제반 문제 논의
   마. 시설확충, 교재교구확보, 특수교육 활성화에 대한 논의 등
   바. 방과후 학교 활동 및 기타 특수학급에 관련된 제반 심의 사항

제39조 (운영)
1.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40조 (학칙 개정 절차)

1.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제안된 학칙 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4. 기타 학칙 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1조 (기타)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준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7년 4월 13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4월 1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9년 4월 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0년 4월 8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1년 3월 22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4월 1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8년 4월 1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9년 4월 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0년 4월 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11.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